

허가 등의 수수료(제77조제1항 관련)

대상	금액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	3만원
2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	2만원
3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	1만5천 원
4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	1만5천 원
5.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	1만5천 원
6.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	3만원
7.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·재등록	3만원
8.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	1만5천 원
9. 변경허가	1만5천 원
10. 변경등록	1만5천 원
11. 허가증 재발급	1만5천 원
12. 등록증 재발급	1만5천 원